

화곡 더리브 스카이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화곡 더리브 스카이의 입주모집공고(2022.11.18) 이 후 변경된 내용(2022.11.25기준)이 있으니 기존공고문을 숙지하신 청약자 및 계약자께서는 아래의 정정내용에 대해 확인 및 숙지를 통해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무기기간 변경

(정정전)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본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은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거주무기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정정후)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본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은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94퍼센트 인 경우로 2년간의 거주무기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일 변경

(정정전) 2022.12.08.(목)~2022.12.15.(목) (10:00~17:00)

(정정후) 2022.12.08.(목)~2022.12.13.(화) (10:00~17:00)

■ 생애최초 특별공급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기준 변경

(정정전)

공급유형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2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208,934원	~7,200,809원	~7,326,072원	~7,779,825원	~8,233,578원	~8,687,331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6,208,935원~ 7,450,721원	7,200,810원~ 8,640,971원	7,326,073원~ 8,791,286원	7,779,826원~ 9,335,790원	8,233,579원~ 9,880,294원	8,687,332원~ 10,424,797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208,935원~ 8,692,508원	7,200,810원~ 10,081,133원	7,326,073원~ 10,256,501원	7,779,826원~ 10,891,755원	8,233,579원~ 11,527,009원	8,687,332원~ 12,162,26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450,722원~ 9,934,294원	8,640,972원~ 11,521,294원	8,791,287원~ 11,721,715원	9,335,791원~ 12,447,720원	9,880,295원~ 13,173,725원	10,424,798원~ 13,899,730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8,692,509원~	10,081,134원~	10,256,502원~	10,891,756원~	11,527,010원~	12,162,264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정정후)

공급유형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2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8,071,614원	~9,361,052원	~9,523,894원	~10,113,773원	~10,703,651원	~11,293,530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160% 이하	8,071,615원 ~9,934,294원	9,361,053원 ~11,521,294원	9,523,895원 ~11,721,715원	10,113,774원 ~12,447,720원	10,703,652원 ~13,173,725원	11,293,531원 ~13,899,730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160%이하	~9,934,294원	~11,521,294원	~11,721,715원	~12,447,720원	~13,173,725원	~13,899,730원
	1인 가구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 가구등 유상품목 중 변경

(정정전)

옵션위치	항목구분	세부내용	주택형별 공급금액						비고	
			59㎡	55㎡	50㎡	41㎡	40㎡	33㎡		30㎡
부부욕실	가구	상부장+ 도어	1,650,000	-	-	-	-	-	-	59㎡ 기준
		부속물비데	330,000	-	-	-	-	-	-	
욕실	엑세서리		-	-	-	-	-	-	-	30㎡, 33㎡, 40㎡, 41㎡, 50㎡, 55㎡ 기준
		부속물,비데, 환풍기	495,000	495,000	495,000	495,000	495,000	495,000	495,000	
	선반	엔지니어드스톤	-	-	-	-	-	-	-	59㎡ 기준
	선반	엔지니어드스톤	6,600,000	6,600,000	6,600,000	5,500,000	5,500,000	4,400,000	4,400,000	공통

(정정후)

옵션위치	항목구분	세부내용	주택형별 공급금액						비고	
			59㎡	55㎡	50㎡	41㎡	40㎡	33㎡		30㎡
욕실1 (부부)	욕실장	슬라이딩장	1,650,000	-	-	-	-	-	-	59㎡ 기준
	비데	비데 욕실헨(욕실2포함)	825,000	-	-	-	-	-	-	
욕실2 (공용)	엑세서리	비데,욕실헨,일체형등	-	495,000	495,000	495,000	495,000	495,000	495,000	59㎡ 비데제외
	욕실선반	엔지니어드스톤	6,600,000	6,600,000	6,600,000	4,400,000	4,400,000	2,200,000	2,200,000	

※상기 변경항목 외 경미한 오류수정사항은 아래의 공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안내 사항

- 화곡 더리브 스카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건본주택 방문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s://www.화곡더리브스카이.com>)를 통해 분양일정 및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 건본주택 방문시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건본주택 입장 전 및 건본주택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건본주택 입장 전 열화상 카메라 또는 체온계 측정을 통한 체온이 37.3도가 넘는 경우
 - 최근 1개월 이내 해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지역)에 체류한 경우
 - 기타 사업주체 등이 요구한 사항에 불응할 경우
- 2. 건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은 건본주택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입장 인원이 제한됩니다.)
 - ※ 건본주택 방문 일정은 당첨자 발표 이후 개별 통보 및 예약 예정입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건본주택 관광,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통보 할 예정입니다.

■ 유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통보 할 예정입니다.

■ 화곡 더리브 고객센터(1588-4236)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장시간의 전화상담요청 등으로 통화의 지연 및 대기, 약자의 개인적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필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등)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및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개정 시행된 내용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 11. 18.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강서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되며,(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 (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제1항제6호),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 11. 18.) 현재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2020. 11 .18. 이전부터 계속 거주)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거주(2020. 11. 18. 이전부터 계속 거주)해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청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청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청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	-	-	필요	필요	필요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O	O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O	O	X	X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청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

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정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정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정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정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정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제 제한 청약자가 가정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화곡더리브스카이.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0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용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정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멸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인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8년	8년

-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주택법 시행령」 별표3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당첨자는 8년까지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됩니다.
- ※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6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본 아파트의 소유권을 전매제한기간 내에는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 등기하며,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주택법」 제64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이 명시됩니다.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유기기간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본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은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94퍼센트 인 경우로 2년간의 거주유기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 공급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 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 정지, 등록 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본 아파트의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무순위 청약 및 임의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또는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구입하여 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제19조제4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자격검증 서류제출	계약체결
		1순위 해당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	1순위 기타 (서울특별시 2년미만 거주/경기도/인천광역시 거주)	2순위			
일정	2022.11.28(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2022.11.29.(화) 09:00~17:30	2022.11.30.(수) 09:00~17:30	2022.12. 1.(목) 09:00~17:30	2022.12.07.(수)	-2022.12.08.(목)~2022.12.13.(화) (10:00~17:00)	- 2022.12.19.(월)~2022.12.21.(수) (10:00~16:00)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우편등기 접수(빠른등기)	견본주택방문 (10:00 ~ 17:00)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체 견본주택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분양홍보관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정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기관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다른 필요한 분양서류 일체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법」 제3조 1항 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포함)체결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주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부동산 등기(최고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고나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22.02.28.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서구 - 주택과 - 201593 (2022.11.1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서울특별시 강서구 - 주택과 - 202071 (2022.11.23.)로 입주자모집공고 변경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370-76 외 6필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13층 1개동 총 14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74세대

■ 입주예정일 : 2023년 3월 예정(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실)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차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기관 추천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2000837	01	030.2694	30	030.2694	011.2312	041.5006	023.5625	065.0631	010.7085	12	-	4	1	2	2	9	3	1
		02	033.6442	33	033.6442	012.2617	045.9059	026.1895	072.0954	011.9025	12	-	4	1	2	2	9	3	1
		03	040.9032	40	040.9032	014.8900	055.7932	031.8401	087.6333	014.4705	12	-	4	1	2	2	9	3	1
		04	041.8783	41	041.8783	016.6553	058.5336	032.5992	091.1328	014.8155	12	1	4	1	2	2	10	2	1
		05	050.5169	50	050.5169	016.9301	067.4470	039.3237	106.7707	017.8716	12	1	4	-	2	2	9	3	1
		06	055.8501	55	055.8501	021.4657	077.3158	043.4753	120.7911	019.7584	36	6	4	-	2	2	14	22	1
		07	059.0930	59	059.0930	019.1850	078.2780	045.9996	124.2776	020.9056	44	6	4	-	2	2	14	30	1
		합 계										140	14	28	4	14	14	74	66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건본주택 및 분양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전용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전기실,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건본주택 및 분양안내문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천의 방법으로 우선공급합니다. 단,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원]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동별 라인별	층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금				계약금 (10%)		잔금 (90%)		비고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시	1주일 내	입주지정일		
30	12	101동(9호)	2~4층	3	161,881,223	106,068,777	-	267,950,000	26,795,000	-	241,155,000	-	
			5층	1	167,922,695	110,027,305	-	277,950,000	27,795,000	-	250,155,000	-	
			6층	1	176,984,902	115,965,098	-	292,950,000	29,295,000	-	263,655,000	-	
		101동(12호)	7층	1	183,026,373	119,923,627	-	302,950,000	30,295,000	-	272,655,000	-	
			2~4층	3	161,881,223	106,068,777	-	267,950,000	26,795,000	-	241,155,000	-	
			5층	1	167,922,695	110,027,305	-	277,950,000	27,795,000	-	250,155,000	-	
		6층	1	176,984,902	115,965,098	-	292,950,000	29,295,000	-	263,655,000	-		

33	12	101동(13호,16호)	7층	1	183,026,373	119,923,627	-	302,950,000	30,295,000	-	272,655,000	-
			2~4층	6	167,922,695	110,027,305	-	277,950,000	27,795,000	-	250,155,000	-
			5층	2	173,964,166	113,985,834	-	287,950,000	28,795,000	-	259,155,000	-
			6층	2	194,293,717	127,306,283	-	321,600,000	32,160,000	-	289,440,000	-
40	12	101동(14~15호)	7층	2	201,150,787	131,799,213	-	332,950,000	33,295,000	-	299,655,000	-
			2층	2	196,317,610	128,632,390	-	324,950,000	32,495,000	-	292,455,000	-
			3층	2	202,359,081	132,590,919	-	334,950,000	33,495,000	-	301,455,000	-
			4층	2	208,400,552	136,549,448	-	344,950,000	34,495,000	-	310,455,000	-
			5층	2	214,442,024	140,507,976	-	354,950,000	35,495,000	-	319,455,000	-
			6층	2	219,879,348	144,070,652	-	363,950,000	36,395,000	-	327,555,000	-
41	12	101동(1호,4호)	7층	2	226,524,966	148,425,034	-	374,950,000	37,495,000	-	337,455,000	-
			11층	2	256,490,664	168,059,336	-	424,550,000	42,455,000	-	382,095,000	-
			12층	2	259,511,400	170,038,600	-	429,550,000	42,955,000	-	386,595,000	-
		101동(2호,3호)	13층	2	265,552,871	173,997,129	-	439,550,000	43,955,000	-	395,595,000	-
			11층	2	255,886,517	167,663,483	-	423,550,000	42,355,000	-	381,195,000	-
			12층	2	258,907,253	169,642,747	-	428,550,000	42,855,000	-	385,695,000	-
50	12	101동(10~11호)	13층	2	264,948,724	173,601,276	-	438,550,000	43,855,000	-	394,695,000	-
			2~4층	6	274,131,760	179,618,240	-	453,750,000	45,375,000	-	408,375,000	-
			5층	2	280,173,232	183,576,768	-	463,750,000	46,375,000	-	417,375,000	-
			6층	2	283,193,967	185,556,033	-	468,750,000	46,875,000	-	421,875,000	-
55	36	101동(1호,4호)	7층	2	289,235,438	189,514,562	-	478,750,000	47,875,000	-	430,875,000	-
			2층~4층	6	314,609,618	206,140,382	-	520,750,000	52,075,000	-	468,675,000	-
			5층	2	320,651,089	210,098,911	-	530,750,000	53,075,000	-	477,675,000	-
			6층	2	322,463,531	211,286,469	-	533,750,000	53,375,000	-	480,375,000	-
			7층	2	324,275,972	212,474,028	-	536,750,000	53,675,000	-	483,075,000	-
			8층	2	326,088,413	213,661,587	-	539,750,000	53,975,000	-	485,775,000	-
		101동(2호,3호)	9층	2	327,900,855	214,849,145	-	542,750,000	54,275,000	-	488,475,000	-
			10층	2	329,713,296	216,036,704	-	545,750,000	54,575,000	-	491,175,000	-
			2층~4층	6	311,588,882	204,161,118	-	515,750,000	51,575,000	-	464,175,000	-
			5층	2	320,651,089	210,098,911	-	530,750,000	53,075,000	-	477,675,000	-
			6층	2	321,859,384	210,890,616	-	532,750,000	53,275,000	-	479,475,000	-
			7층	2	323,671,825	212,078,175	-	535,750,000	53,575,000	-	482,175,000	-
			8층	2	325,484,266	213,265,734	-	538,750,000	53,875,000	-	484,875,000	-
			9층	2	327,296,708	214,453,292	-	541,750,000	54,175,000	-	487,575,000	-
59	44	101동(5호~8호)	10층	2	329,109,149	215,640,851	-	544,750,000	54,475,000	-	490,275,000	-
			3~4층	8	323,369,751	211,880,249	-	535,250,000	53,525,000	-	481,725,000	-
			5층	4	324,578,046	212,671,954	-	537,250,000	53,725,000	-	483,525,000	-
			6층	4	326,390,487	213,859,513	-	540,250,000	54,025,000	-	486,225,000	-
			7층	4	328,202,928	215,047,072	-	543,250,000	54,325,000	-	488,925,000	-
			8층	4	330,015,370	216,234,630	-	546,250,000	54,625,000	-	491,625,000	-
			9층	4	331,827,811	217,422,189	-	549,250,000	54,925,000	-	494,325,000	-
			10층	4	333,640,253	218,609,747	-	552,250,000	55,225,000	-	497,025,000	-
			11층	4	335,452,694	219,797,306	-	555,250,000	55,525,000	-	499,725,000	-
			12층	4	337,265,135	220,984,865	-	558,250,000	55,825,000	-	502,425,000	-
59	44	101동(5호~8호)	13층	3	339,681,724	222,568,276	-	562,250,000	56,225,000	-	506,025,000	-
			13층(8호)	1	340,285,871	222,964,129	-	563,250,000	56,325,000	-	506,925,000	-

- ※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형별, 층별, 향별, 동간간섭별, 특화설계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 면적합산시 소수점 5자리에서 단수조정으로 계산한 값이 적용되어 소수점 4자리로 산정하였으며,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 계약금(공급금액의 10%)은 계약시 일시에 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할 경우 지정계약 기간 내 1차 계약금 납부 후 7일 내 2차 잔여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2차 잔여계약금의 납부지연 및 미납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는 별도의 고지 없이 판매할 수 있고 판매시 예비입주자, 무순위 신청자 순으로 먼저 배정하며 이후 사업주체가 임의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 ※ 계약금(공급금액의 10%)을 납부하거나 1차, 2차 계약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계약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 공통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제3항 및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강서구청 심의 결과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선택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공정을 60% 이상 공정진행으로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 기준으로 시공되어 별도 선택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 없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공급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산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상호정산 또는 부대시설면적 조정(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시에는 토요일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9억원 이하 주택형이라도 정부정책, 본인의 대출 부적격 사유 등으로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대출 미신청자 및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연체료 부과 또는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계약 해제 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의 잔금을 약정된 납부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선납에 따른 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으며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 통보하여 사전방문 및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 및 판매조건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요,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사업주체에서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격 검증서류는 서류 접수기간 내에 원본(사본 불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로 자격검증이 안될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286 1129 2130 1315"> <thead> <tr> <th>구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약식표기)		30	33	40	41	50	55	59	합계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국가유공자(35조,36조)	1	1	1	1	1	1	-	6
	장기복무제대군인	1	-	1	-	-	-	-	2
	10년이상복무군인	-	1	-	-	1	-	-	2
	장애인	-	-	-	1	-	1	-	2
	중소기업근로자	-	-	-	-	-	-	2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50%)	-	-	-	1	1	3	3	8
	서울특별시 2년미만 거주/경기도/인천광역시거주 (50%)	-	-	-	-	-	3	3	6
신혼부부 특별공급		4	4	4	4	4	4	4	28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1	1	1	-	-	-	4
생애최초 특별공급		2	2	2	2	2	2	2	14
합계		9	9	9	10	9	14	14	74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4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유형	추천기관	청약통장 구비여부
장애인	서울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청약통장 필요없음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우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3항에 따른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당 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4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내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내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우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거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우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단, 임신 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40조 제3항에 의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를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함.
 - 공급신청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시 작성한 기재사항이 다른 경우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우주택기간 오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에 따름.
-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서울특별시내 2년 이상 계속 거주자(2020.11.18.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우선공급 낙첨자와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우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지역 우선 공급에서 낙첨된 자가 기타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는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우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우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우주택이어야 하며, 우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우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우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우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우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우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당 사도로 본다.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28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18.)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재혼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가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 포함)만 1순위자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자녀수를 산정할 때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사어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2022.11.18	전년도 소득	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우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2020.11.18.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2020.11.18.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2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2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208,934원	~7,200,809원	~7,326,072원	~7,779,825원	~8,233,578원	~8,687,331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6,208,935원~ 7,450,721원	7,200,810원~ 8,640,971원	7,326,073원~ 8,791,286원	7,779,826원~ 9,335,790원	8,233,579원~ 9,880,294원	8,687,332원~ 10,424,797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208,935원~ 8,692,508원	7,200,810원~ 10,081,133원	7,326,073원~ 10,256,501원	7,779,826원~ 10,891,755원	8,233,579원~ 11,527,009원	8,687,332원~ 12,162,26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450,722원~ 9,934,294원	8,640,972원~ 11,521,294원	8,791,287원~ 11,721,715원	9,335,791원~ 12,447,720원	9,880,295원~ 13,173,725원	10,424,798원~ 13,899,730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8,692,509원~	10,081,134원~	10,256,502원~	10,891,756원~	11,527,010원~	12,162,264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벌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로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로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	-------------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고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4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주민등록법상 세대주로 한정하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기재된 세대주는 인정 안됨)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에 따름.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2020.11.18.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정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4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2020.11.18.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거주자로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주민등록법상 세대주로 한정하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기재된 세대주는 인정 안됨)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사어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2022.11.18	전년도 소득	전년도 소득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2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2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8,071,614원	~9,361,052원	~9,523,894원	~10,113,773원	~10,703,651원	~11,293,530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160% 이하	8,071,615원 ~9,934,294원	9,361,053원 ~11,521,294원	9,523,895원 ~11,721,715원	10,113,774원 ~12,447,720원	10,703,652원 ~13,173,725원	11,293,531원 ~13,899,730원
추천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1인 가구	160%이하	~9,934,294원	~11,521,294원	~11,721,715원	~12,447,720원	~13,173,725원	~13,899,730원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벌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휴직 등의 경우 소득산정방법

-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 가입자 중 전년도에 휴직 등(파업 등의 이유로 실제 근무를 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으로 인해 소득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의 소득을 추정하여 전년도 소득을 산정한다.
- ② 전년도 중 일부 기간만 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추정합니다.
- ③ 전년도 전체에 걸쳐 휴직 등을 하고 해당 연도에 복직 등(정상적으로 근로에 종사하게 된 경우)을 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근로자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를 징구하여 월평균소득을 추정합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월평균소득의 추정이 불가능한 자는 본인의 재직증명서와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등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2020.11.18.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중 입주자 저축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아래 각 목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가.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지역별/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나. 세대주일 것

다.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라.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 거주지역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낮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④ 청약 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소유한 주택(분양권 등 포함)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입주자지속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전용85㎡ 이하)	1순위	전용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지속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점수)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2순위 청약 제한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모함)에 가입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 불가

▪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 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분	내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p> <p>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p>※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3)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p>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p>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p>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p>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p>

■ 청약 가정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제6호에 의거 무주택 세대원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제외)되지만 부양가족수 산정시에는 주택 소유 직계 존속 및 그 배우자는 제외됨.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거주구분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기관추 천(장애인),생애최 초,신혼	수도권 거주자 (서울특별시 / 경기도 / 인천광역시)	2022.11.28(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36)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거주자 (2020.11.18.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		2022.11.29.(화)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기타지역	서울특별시 2년미만거주 /경기도/인천광역시 거주	2022.11.30.(수) 09:00~17:30			
2순위	수도권 거주자 (서울특별시 / 경기도 / 인천광역시)	2022.12.01.(목) 09:00~17:30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정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②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일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출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여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서류 제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22.12.07.(수)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22.12.08.(목)~2022.12.13.(화) (10:00~17:00) 장소 :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36) ※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일정 및 운영 시간은 상이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2.12.19.(월)~2022.12.21.(수) (10:00~16:00) 장소 - 견본주택 (장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36)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치가 가능하나 정보 오류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치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 ※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5항 등에 따라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되고 부적격자로 관리됩니다.
-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확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수납은 불가합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사업주체 홈페이지(www.화곡더리브스카이.com)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쇼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2.12.7.(수)~2022.12.16.(금) (10:00~17:00)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2.12.07 (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동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 우선공급* 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2020.11.18.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신청자가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p>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공급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연락처 변경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예비당첨자 중에서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약기간	장 소	비 고
당첨자 계약 체결	2022.12.19.(월) ~ 2022.12.21.(수) 10:00 ~ 16:00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36 화곡더리브스카이 홍보관	

- 당첨자 계약 체결 일정 및 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가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공급금액(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KB국민은행	813001-04-097708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습니다.
- 공급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무통장 입금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지정된 잔금 납부일에 위 해당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분양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 시 비교란에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1502홍길동' / 103동 702호 계약자 → '1030702홍길동'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 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착오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상기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효력이 상실됩니다.
-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공급금액(분양대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

■ 계약 구비서류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2.11.18)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0.12.27.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로 계약 체결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 체결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분실했을 경우 가산세가 최고 300%까지 발생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수입인자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단,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계약시	○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본인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
	○	○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및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포함)	본인	접수 장소에 비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 필수 제출(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 일체	본인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인지세 납부 증명서	본인	수입인자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 - 1억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적격 여부 확인 증빙 서류	본인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계약 시 (추가제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위임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위임장	본인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본인	위임인과 수입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 필요

■ 계약조건

- 사업주체가 본 공동주택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연대보증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분양계약자는 연대보증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사업주체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대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확인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단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청약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더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기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현황 등)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일반공급은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니거나 주민등록법령 위반(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등)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으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해당 당첨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공급 계약을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최초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가산세를 포함하며, 전자수입인지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본 주택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이때 다른 주택의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계약관리(안내, 고지 등)를 위해 계약체결 시 도로명 주소(행정안전부 안내 참고)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 시 도로명 주소가 명기된 제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종전 지번 기준주소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이후 인허가청의 요청 및 지시로 인하여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과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위치 등) 등은 사업계획승인 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지정하여 지정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이며, 입주자 사전방문일 등 사업주체가 지정한 날짜 외에는 현장에 출입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분양계약서 및 계약구비서류에 준합니다.

V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구분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	계약장소
특별공급 일반공급	-2022.12.08.(목)~2022.12.13.(화) (10:00~17:00)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36 화곡 더리브 홍보관

■ 특별공급(예비입주자 포함)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 안내(공통서류와 당첨 유형별 필수 서류 및 해당 추가서류 포함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서류 (예비입주자 포함)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본인	•건본주택 비치, 무주택 구성원 입증서류(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	•건본주택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신청자용)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에 한함 / 대리인 발급 불가)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시 생략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발급)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발급)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보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발급)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 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거주기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발급기간 : 기록대조일은 당청자 생년월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 : 기록대조일은 해당자 생년월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기관 추천서(기관 추천 명단 확인으로 같음)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해외근우자(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파견 및 출장명령서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 ①비자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안됨
	○	체류국가 확인이 가능한 여권사본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권 본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안됨 •여권 발급 경력이 전혀 없는 세대원의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원 제출
	○	주민등록초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 체류 중인 경우 생업사정 불인정 •배우자 및 세대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본주택 비치,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발급)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정을 인정 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요망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발급)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 된 경우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시·도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의 경우 (건본주택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의 경우 		

※ 본인 이외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함.(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18.)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건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2005.07.0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 이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초본 1통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재된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 주소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계약체결 전 청약자격 검증 서류 제출일 내 제출)

해당자격		소득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① 해당 직장 ②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③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② 해당 직장 ③ 국민연금공단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①,② 해당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 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①,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법인사업자	① 법인등기부등본(사본) ② 사업자 등록증 ③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①,② 등기소 ③ 세무서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원본) ②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③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및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①,② 세무서 ③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 직장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② 사실증명서(신고사실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① 분양홍보관 ② 세무서 또는 홈택스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서류 제출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해당직장/세무서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① 세무서 ②, ③ 해당직장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 상기 소득 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포함)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 안내

- ※ 본인 이외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함.(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예비입주자 포함)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발급)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발급)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발급)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로발급)	본인	•단독세대일 경우(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이혼한 경우) 또는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출입국사실증명서	세대원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가능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발급)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복무확인서	본인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 (10년이상)을 명시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파견 및 출장명령서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 ①비자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안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체류국가 확인이 가능한 여권사본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권 본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안됨 •여권 발급 경력이 전혀 없는 세대원의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원 제출
	○	주민등록초본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 체류 중인 경우 생업사정 불인정 •배우자 및 세대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가정제 당첨자 및 가정제 당첨 예비입주자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발급)	피부양 직계존속 부양가족 산정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등본상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출입국사실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부양가족 산정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분에 등재 한함)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 부양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출입국사실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 본인 발급 인정증명서에 한함 [용도 : 위임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청약자의 인감동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위임인과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필요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서류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2005.07.0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초본 1통이 필요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신혼 부부 특별 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재직증명서 필수 -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자격요건확인서	-	•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건본주택 비치)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임신증명서류는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임신의 경우 (건본주택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의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비사업자 확인각서를 제출한 무직자는 신고사실 없음을 확인(전년도 기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	배우자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본인 및 세대원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본 모집공고 16페이지 자산보유기준 및 세부내역표 참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	
생애 최초 특별 공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로 발급)	피부양 직계존속	•소득산정 시 당청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 하여 발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		피부양 직계비속	•만 18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소득증빙서류(“상세”로 발급)	세대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재직증명서 필수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세대주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본인 및 세대원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본 모집공고 16페이지 자산보유기준 및 세부내역표 참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발급)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직계존속의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피부양 직계존속 배우자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	본인 또는 자녀	•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3자 대리 제출 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본인	•용도에 「주택공급신청 위임용」으로 직접 기재, 단 외국국적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관한 공정증서 ※ 본인 발급용
	○		인감도장	본인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본인	•건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인장	대리인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우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계약 시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무순위 청약 및 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으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이 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 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②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당첨된 청약관련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①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여부를 검색하여 부정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으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단, 세대당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연대보증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행정구역,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분양사무소)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시 당해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자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간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자가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관리(안내, 고지 등)를 위해 계약체결 시 2011년 7월 29일부터 새로운 법정주소인 도로명 주소(행정안전부 안내 참고)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시 도로명 주소가 명기된 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종전 지번 기준주소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한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공급계약서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① 사업주체는 동 법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②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1. 수도권 :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 3개월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 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에 건본주택(분양사무소)를 방문하여 아래 계약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세대주, 당해 거주요건,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사전검수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다른주택의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Ⅶ

추가 선택품목 계약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주택법」 제 54조 제1항 제 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벽지,조명,위생기기,타일,창호,가구,주방 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 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나, 본 아파트는 건축공정 100분의 60을 초과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마이너스 옵션제를 실시 할 수 없으며, 계약시 기 시공된 모든 내부 여건을 파악하고 계약해야 하며, 기시공된 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변경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단위: 원, 부가세포함]

구 분	금 액	납입방법	비고
59	1,978,000	계약금(10%)-계약시 / 잔 금(90%)-입주시	59 외 세대 발코니확장 없음

■ **발코니 확장 비용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	KB국민은행	813001-04-097708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 발코니 확장 대금은 상기 납부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건본주택 현금수납 불가) 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계약할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101동 1001호 홍길동→'1011001홍길동'. (단,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경과 후 사업주체에 환불신청서를 제출시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와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이체 바라며 상기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착오 입금에 대한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지정된 추가선택품목의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세부 사항은 건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건축공정 100분의 60을 초과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계약시 기 시공된 모든 내부 여건을 파악하고 계약해야 하며, 기시공된 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변경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하여야 하며, 난방효율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세대(비확장형 세대) 선택시 냉매배관, 드레인,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의 개별 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을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품목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판매일정은 추후 수분양자에게 별도로 공지하고 계약 진행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잔금),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타입(m2)	옵션	실내기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10%)	잔금(90%)	
30	○	2대	4,950,000	495,000	4,455,000	LG전자
33	○	2대	4,950,000	495,000	4,455,000	
40	○	2대	4,950,000	495,000	4,455,000	
41	○	2대	4,950,000	495,000	4,455,000	
50	○	2대	4,950,000	495,000	4,455,000	
55	○	2대	4,950,000	495,000	4,455,000	
59	○	2대	4,950,000	495,000	4,455,000	

[단위: 원, 부가세포함]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건축공정 100분의 60을 초과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계약시 기 시공된 모든 내부 여건을 파악하고 계약해야 하며, 기시공된 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변경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에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리모콘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게 제품이 설치됩니다.
- 선택형에 따라 실이 통합되는 경우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개소는 변동될 수 있으며, 시스템에어컨은 [LG전자]제품으로 시공됩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델과 브랜드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가구 등 유상 선택품목

■ 현관 특화

[단위 : 원, 부가세포함]

옵션위치	항목구분	세부내용	주택형별 공급금액						비고	
			59m ²	55m ²	50m ²	41m ²	40m ²	33m ²		30m ²
현관	펜트리	현관 펜트리	5,500,000	-	-	-	-	-	-	59m ² 기준
	가구	현관장류	3,300,000	3,300,000	3,300,000	2,750,000	2,750,000	2,750,000	2,750,000	공통

	중문	3연동 슬라이딩 도어	2,200,000	-	-	-	-	-	-	59㎡ 기준
--	----	-------------	-----------	---	---	---	---	---	---	--------

■ROOM 특화

옵션위치	항목구분	세부내용	주택형별 공급금액							비고
			59㎡	55㎡	50㎡	41㎡	40㎡	33㎡	30㎡	
침실1	파우더룸	파우더가구-상판 엔지니어드스톤+가구조명 +거울	8,800,000	-	-	-	-	-	-	59㎡ 기준
				-	-	-	-	-	-	
알파룸	알파룸	3연동 슬라이드 도어	3,300,000	-	-	-	-	-	-	59㎡ 기준
발코니	발코니1	전동식 빨래건조대	220,000	220,000	220,000	220,000	220,000	220,000	220,000	공통
		세탁 선반	165,000	165,000	165,000	165,000	165,000	165,000	165,000	
거실	일반가구	tv 오픈장+도어	-	-	-	-	7,700,000	7,700,000	7,700,000	30㎡, 33㎡, 40㎡ 기준
	아트월	수입타일	10,450,000	10,450,000	8,800,000	6,600,000	-	-	-	41㎡, 50㎡, 55㎡, 59㎡ 기준
	천정	우물 천장	5,500,000	5,060,000	4,675,000	3,795,000	-	-	-	

■욕실 특화

옵션위치	항목구분	세부내용	주택형별 공급금액							비고
			59㎡	55㎡	50㎡	41㎡	40㎡	33㎡	30㎡	
욕실1 (부부)	욕실장	슬라이딩장	1,650,000	-	-	-	-	-	-	59㎡ 기준
	비데	비데 욕실헨(욕실2포함)	825,000	-	-	-	-	-	-	
욕실2 (공용)	엑세서리	비데,욕실헨,일체형등	-	495,000	495,000	495,000	495,000	495,000	495,000	59㎡ 비데제외
	욕실선반	엔지니어드스톤	6,600,000	6,600,000	6,600,000	4,400,000	4,400,000	2,200,000	2,200,000	

■조명 특화

옵션위치	항목구분	세부내용	주택형별 공급금액							비고
			59㎡	55㎡	50㎡	41㎡	40㎡	33㎡	30㎡	
조명	거실, 욕실, 주방, 현관, 침실, 1, 2, 발코니	매입등	3,300,000	2,750,000	2,750,000	2,530,000	2,530,000	2,200,000	2,200,000	거실, 주방, 욕실, 1, 2, 현관, 파우더룸, 센서등 59㎡ 기준 / 거실, 주방, 욕실, 현관, 발코니, 센서등 30㎡, 33㎡, 40㎡, 41㎡, 50㎡, 55㎡ 기준

■ 주방 특화

옵션위치	항목구분	세부내용	주택형별 공급금액							비고
			59㎡	55㎡	50㎡	41㎡	40㎡	33㎡	30㎡	
주방	시스템장	아일랜드식탁+장	-	6,600,000	6,600,000	-	-	-	-	50㎡, 55㎡ 기준
		냉장고장	4,400,000	4,400,000	4,400,000	-	-	-	-	50㎡, 55㎡, 59㎡ 기준
		B/I 냉장고장	-	-	-	3,300,000	3,300,000	3,036,000	2,750,000	30㎡, 33㎡, 40㎡, 41㎡ 기준
		B/I 김치냉장고장	2,200,000	-	-	-	-	-	-	59㎡ 기준
		키친장	3,300,000	3,300,000	3,300,000	-	-	-	-	50㎡, 55㎡, 59㎡ 기준
	주방 가전	주방 tv	275,000	-	-	-	-	-	-	59㎡ 기준
		음식물 탈수기	110,000	110,000	110,000	-	-	-	-	50㎡, 55㎡, 59㎡ 기준
		3구 전기쿡탑+렌지후드	550,000	550,000	550,000	550,000	-	-	-	41㎡, 50㎡, 55㎡, 59㎡ 기준
		2구 전기쿡탑+렌지후드	-	-	-	-	275,000	275,000	275,000	30㎡, 33㎡, 40㎡ 기준
		BI콤비냉장고	-	-	-	-	660,000	660,000	660,000	30㎡, 33㎡, 40㎡ 기준
		BI냉장고	-	-	-	660,000	-	-	-	41㎡ 기준
		빌트인 김치냉장고	1,320,000	1,320,000	1,320,000	-	-	-	-	50㎡, 55㎡, 59㎡ 기준
	천정	우물형 천정	3,300,000	-	-	-	-	-	-	59㎡ 기준

■세대공통

옵션위치	항목구분	세부내용	주택형별 공급금액							비고
			59㎡	55㎡	50㎡	41㎡	40㎡	33㎡	30㎡	
세대공통 가전	세대보안 시스템	월패드,도어카메라,디지털도어락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공통
			-	-	-	-	-	-	-	
			-	-	-	-	-	-	-	
	시스템에어 컨		-	-	-	-	-	-	-	59㎡ 기준
거실+침실1		4,950,000	4,950,000	4,950,000	4,950,000	4,950,000	4,950,000	4,950,000	공통	

※ 유상옵션 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상기 표의 동·호수에 추가 품목(유상옵션)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상기 표의 동·호수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 시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비 포함 별도 추가 금액이 발생합니다. 상기 표의 동·호수에 따라 추가 품목이 있는 경우 추가 품목에 대한 별도 계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 현장공정상 위 표의 추가 품목(유상옵션)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품목을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 패키지는 개별품목이 불가하며, 해당 패키지는 모집공고 내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주방가구 등의 가구 뒷면 및 바닥, 천정에는 바닥마감재 및 벽지, 천정지 등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 상판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판 크기와 형태에 따라 나누어 제작/설치되는 관계로 본 시공시 연결 부위가 발생(세대별로 위치가 다를 수 있음)되며, 제품 특성상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우물천장(거실, 주방) 및 유상옵션 설비 환기배관 및 스프링클러 배관 설치로 인해 크기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각종가구 손잡이, 하드웨어, 레일, 악세서리 등의 디테일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 가구의 길이, 디자인, 위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사유와 관련하여 설치완료 후 이동이 불가합니다.
- 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조명기구 위치변경은 불가하며 계약 전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3연동 슬라이딩 도어는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벽과 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관중문은 주택형에 따라 크기가 다르게 시공되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자재, 하드웨어 등의 사양이 동질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의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파손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신청 시 주택형에 따라 디딤판의 크기, 디자인, 위치는 미선택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신청 시 주택형에 따라 벽체의 길이 또는 가구의 크기, 디자인, 위치는 미선택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가전제품 품목은 선택에 따라 미설치되는 기본제공 가전, 가구 등의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 빌트인 가전제품의 경우 설치 전 공급을 위한 매립호스가 설치되며, 이에 대한 시공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가전은 타입에 따라 사양, 색상, 도어 개폐 방향, 설치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자재의 이음부는 자재 특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공동주택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아래의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함[단, 추후(계약전 등) 가상계좌(동호수마다 다름)를 안내할 경우 반드시 해당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 계약시 아래 계좌 입금 후 입금증 주택전시관 제출[주택전시관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

- 통합옵선 선택품목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10%), 잔금(90%)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별매품에 준합니다.

계좌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기타품목)	신한은행	140-010-181470	에스지씨이테크건설(주)

■ 유의사항

- 옵선 선택품목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10%), 잔금(90%)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별도 공급계약서에 준합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선 선택품목 대금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유상옵선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선 선택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선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선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선 선택품목은 공동주택 공급계약의 부수되는 마감공사로서 소요자재를 선 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계약 이후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시 원상복구, 변경공사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합니다. (단, 수분양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 할 경우 사업주체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유상옵선 선택품목계약은 본 공동주택 계약 해제사유와 동일하며, 공동주택 공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함께 해제됩니다.
- 유상옵선 선택품목계약은 본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유상옵선 선택품목계약 대금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소비자 상대업종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 유상옵선 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 또는 전체)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 건축물 성능수준 표기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의무사항 적용 여부)

구 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방습층 설치 조치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친환경 인증보일러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 · 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미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설치	

■ 공통사항

구 분	내 용
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모집공고문의 유의사항을 명확히 숙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본 유의사항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건축법」에 의거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기되며,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단수정리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단수정리 등에 따른 오차면적은 일부 세대에 할애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각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별도 경계구획 및 구분 등이 불가하여 이를 요구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및 준공 시 확정측량,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증강이 있을 때에는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세대의 공용면적(계단실, 부대복리시설, 주차장. 단, 벽체공용면적은 제외)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합니다. • 각 면적 배분은 관련 법령 및 유사 법령의 기준으로 용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하였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경계 및 대지면적은 준공 시 확정측량 등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조건에 따라 사업부지 내 일부는 도로 확폭 및 차랑 진출입 가감속차로 사용 또는 기부채납되어 사업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공동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대출,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당첨 및 계약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는 사업주체의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후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 계약자는 분양안내, 유의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가 공급계약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공급계약서를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전국일간지에 분실공고를 내고 2주일 후 공증 받은 위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지참하고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사업관계자(사업주체, 시공사, 위탁사) 소정의 양식에 따른 분실각서를 작성하는 등 사업관계자(사업주체, 시공사, 위탁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 할 시에만 공급계약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단, 공급계약서 재발급 방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공동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사업주체+계약자)가 관할 시,군,구청에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신고 혹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해태함으

구 분	내 용
	<p>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는 납부원인이 발생한 날(통상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기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 및 공법의 변경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관계자(사업주체, 시공사, 위탁사)의 협의 및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분양대행사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대행사 변경에 관한 사항은 사업관계자(사업주체, 시공사, 위탁사)의 결정에 따르며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변경시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공사 중 일부 호실 또는 부대복리시설 전체 또는 일부는 현장사무실 및 창고, 샘플실 등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시행위탁자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입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 또는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하여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 및 공사도중 전 세대내 무단출입 및 세대내부의 임의적인 촬영을 금지하며, 무단 촬영물의 유포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인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 시와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단지는 용도별로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공동주택 계약면적 외의 타 시설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으며, 해당 시설 계획(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 등)은 추후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단지 내 타용도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와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단지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배치 상 동별, 향별, 층별, 라인별 차이 등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상이하거나 침해당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상이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 {세대내, 외 및 공용부분(부대복리시설 포함)의 시설물 등의 추가 또는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구 분	내 용
	<p>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부지 인근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사업주체에서 분양을 진행하거나 완료한 공동주택의 마감사양, 설치된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과 본 공동주택을 비교하여 건 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공동주택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형오시설 유무, 도로,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등),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 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시설물 또는 타용도의 건물의 옥상 또는 인근에는 해당 시설의 실외기, 환기 및 배기팬 등의 설비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주동 및 세대는 노출,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세대는 시공 개선 및 품질 관리를 위한 현장 내 공사용 견본세대(목업)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측벽 등에 표기 또는 설치된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 품질 및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의 각 용도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외부 조경 및 공용시설에 장비 반입구, 한전소유의 전기설비 설치 공간(한전패드), 도시가스 관련 시설, 맨홀, 우수조, 실외기, 급배 기구 및 쓰레기 수거장, 재활용 창고(분리수거 공간) 등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냄새, 진동, 소음, 해충, 사생활 침해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 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지상 1층 외부공간은 조경시설 등으로 소음, 분진, 사생활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시 소음 측정으로 인해 인허가청과 협의 후 도로에 면한 면 또는 일부 방음벽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은 국가기관,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 감소 등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주변 주거단지 및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배치구조, 공동주택 동별, 향별, 층별, 라인별 위치에 따라 소음 발생, 일조 간섭, 조망 간섭, 전자파 발생, 전자기장애, 분진 발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 또는 해당 민원으로 인한 행정관청의 공사중단, 권고 등으로 시공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경우,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조정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기관에 대해서는 지체보상금 산정 시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마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나 본 시공 시 발코니 확장 및 확장 시 포함품목은 별도 계약사항으로 기본형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한 동질 및 동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제시된 창호(유리, 프레임)의 강도는 본 공사 시 층수 및 위치에 따라 바람에 의한 영향의 차이로 인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질 및 동급 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 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평면도, 사진 등은 사업주체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사업승인도서 또는 건축허가도서 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확인 및 양지하신 후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견본 주택에 미건립된 세대의 경우 계약 전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건립세대와 다른 사항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 카탈로그 또는 모형 등을 확인 및 숙지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본 시공 시 발코니 확장 및 확장 시 포함품목은 별도 계약사항으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한 동질 및 동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본주택에 제시된 창호(유리, 프레임)의 강도는 본 공사 시 층수 및 위치에 따라 바람에 의한 영향의 차이로 인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건본 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평면도, 사진 등은 사업주체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사업승인도서 또는 건축허가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확인 및 양지하신 후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건본 주택에 미건립된 세대의 경우 계약 전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건본주택 건립세대와 다른 사항은 건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 카탈로그 또는 모형 등을 확인 및 숙지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 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용승인 또는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단지모형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등)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조명, 식재, 주변환경, 부지 고저차, 옥탑부 디자인, 주동/창호형태, 벽체마감, 디테일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조명,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시 소방법에 맞게 설치됩니다.(건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용 소방시설임) • 건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연출용 설비 배관, 배선포함),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사이버 건본주택 포함)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전한 뒤 입주 전 사업관계자(사업주체, 시공사, 위탁사)의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분양홍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건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모형 및 카탈로그에 표현된 조감도, 투시도, 평면도, 배치도, 조명, 조경, 시설물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모형제작 및 그래픽 표현의 한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시공시 구조 등의 안전성 및 입주민의 이용효율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및 건본주택에 표현된 단위세대 평면 등에 표현된 실의 규모 관련 치수 또는 면적 등은 제작 시에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건본주택에 비치된 도서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 모형 및 조감도에 표현된 각 공동주택동 및 부대복리동, 단지 등 외부에 표현된 장식물의 형태, 주출입구에 설치되는 문주의 형태, 외벽의 줄눈 및 리브 등은 본 공사시 시공성 및 구조적 안전성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조감도에 표현된 공동주택 외벽 색채는 인허가 협의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조감도에 표현된 주차장 출입경사로 상부의 캐노피의 설치여부 및 형태 등은 면적산정 등 인허가 사항과 본 공사시 시공성 및 구조적 안전성을 고려하여 미설치 또는 일부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홍보관 포함)에 설치된 배치도, 평면도 및 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본 공사시 설치될 필요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으며 홍보용 이미지 및 모형에 표현된 내용(부대시설, 드라이에어리어(DA), 한전패드,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레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모형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 시 배치, 구획 면적, DA, 조경 및 식재, 조명, 주변환경, 부지레벨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건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학교, 도로, 완충녹지, 공원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건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계유의사항

구분	내용
인허가 및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공사 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경미한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간주하여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2022년 1월 12일 최초 건축심의완료(2021년 12월 26일 접수), 2022년 1월 21일 최초 사업계획승인완료(2021년 11월 09일 접수)를 한 사업장으로, 경과규정의 적용 가능한 법적기준(친환경 관련 포함)에 대해서는 최초 접수일 또는 완료일 당시의 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 준공 전 또는 후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대지면적의 변경으로 건물용 및 용적률의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들의 요청, 입면장식,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 침해가 동·호수별 등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적	<p>지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단지는 공동주택과 판매시설로 각 용도별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토지이므로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각 용도별 대지지분은 용도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되었으며, 별도 경계구획 및 구분 등이 불가하여 이를 요구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p>면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타입 세대의 전용면적에는 발코니 초과면적이 합산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유무에 따라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 등으로 본 공사 시 발코니 실사용 면적 등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공사시 인허가 협의 결과 또는 현장 공사 여건 등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전용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사항은 수분양자의 동의 또는 고지를 진행 후 평면 및 계약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구조 및 성능 개선 등을 위해 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용면적 및 서비스면적, 내부구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분양자의 실제 공급면적(주거 공용면적, 계단실면적 등), 계약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전기실, 지하주차장), 대지지분 및 전용률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공용부 면적(계단실,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기계/전기실, 설비공간 등)은 본 공사시 현장 여건 및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도로 및 조경선, 조경공사, 건물외벽 마감공사 등을 포함한 단지 공사,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인·허가 과정이나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고,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지하층 충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및 각종 평가(소규모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한 내용 중 본 사업과 관련한 사항의 변경으로 본 단지의 사업시행인가의 계획(건축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 등은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여부 또는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됩니다.)
설계변경	<p>단위 세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의 현장여건 및 구조 / 성능 /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구조 안전성 향상 등을 위해 향후 구조형식과 구조부재의(기둥, 보 등) 크기, 위치, 개수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층고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계 변경 시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여건에 따라 콘센트, 조명스위치 등의 위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시된 분양가에 포함되는 항목(가구, 각종 등기구, 전자제품 등)은 개인적인 요구 및 취향에 따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창호 및 유리의 사양 및 크기, 개폐 방식, 개폐 방향, 브랜드, 하드웨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 디자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 벽체에는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감재 두께 및 현장여건에 따라 주동 저층부 외부 마감재(석재뿔칠 등) 적용 구간에 해당하는 세대의 창호사이즈는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 관청의 도시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사용상의 편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가스정압시설 및 전기변압시설 등의 시설물이 입주자 동의 없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가스배관은 건물 외부에 설치되며, 설치 계획에 따라 내부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부대 복리 시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의 구성 및 평면, 입면, 구조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 여건 및 사용성 향상을 위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내 판매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공동주택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의 유효높이 확보를 위하여 일부 기둥, 보와 같은 구조체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환기용 D/A, 제연헬름 D/A, 재활용품보관소 등의 지상 돌출물 및 시설물의 위치 및 형태가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변환경	기부 채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사업부지의 일부는 기부채납(예정)되며, 해당 기부채납 면적은 사업면적에서 제외됩니다. 단지 내 지상1층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분소가 설치되며, 이 시설은 준공 후 시설기부채납 됩니다.
	단지 주변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의 주변 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습니다. 단지 동측에는 폭 약 6m (보차혼용)도로가 설치됩니다. 단지 서측에는 폭 약 4m (보차혼용)도로가 설치됩니다. 단지 동측 도로는 현재 일방통행구역이며, 그로 인하여 주차장 진출입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서측 도로와 남측도로의 연결구간은 화곡중앙시장의 구조물로 인하여 차량통행이 불가하거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남측 도로는 화곡중앙시장 및 시장 구조물로 인하여 차량통행이 불가하거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인접 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남측에는 화곡중앙시장, 북측에는 공영주차장이 위치하여 소음, 냄새, 빛공해, 불법주차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지 경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서측, 동측과 남측 일부는 단지와 도로 간 레벨차이로 인한 계단 또는 경사면, 화단이 설치됩니다. 단지 동측 도로레벨은 단지레벨보다 높으며, 서측 도로레벨은 단지레벨보다 낮아 단지 내 계단, 화단 등이 설치되어 단지 접근성에 제약이 발생하나,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공사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본 단지와 주변도로 및 인접대지간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계단, 옹벽, 화단 등의 구간 및 높이 등의 계획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지와 대지와의 레벨 관계에 의하여 일부 출입구 부분에 계단 및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니 계약시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내 설치되는 운동시설, 옥상조경 단지 내 조경 등 시설물에 인접한 세대 및 저층부 세대는 시설물 및 이용하는 입주민들로 인하여 소음발생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도면 및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내 조경 식재 부분과 인접한 세대 및 저층부 세대는 해충침입, 악취발생, 환기, 채광 및 조망 불량 등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도면 및 모형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과 제연을 위한 시설물(DRY AREA, 배기구 등)과 쓰레기분리수거장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 및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악취, 조명 등에 의해 사생활권 및 환경권과 조망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도면 및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내 지하1층에는 판매시설 등이 설치되며, 그로 인하여 소음 및 냄새, 조명 등에 의해 사생활권 및 환경권과 조망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도면 및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붕, 옥탑층 및 측벽에는 의장용 구조물, 태양광 구조물, 안테나, 이동통신중계기, 피뢰침, 경관조명 및 시행자 또는 시공사 BI 사인물 등이 설치되거나 또는 설치될 수 	

	<p>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접 또는 최상층 세대는 소음, 눈부심, 환경적 영향 및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비용은 전체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환경디자인 개선을 위해 주동 및 공용부 입면 일부 구간에 재료(유리 포함) 및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및 설계상 일부 시각적 간섭 및 공용시설 조명에 의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시공여건 고려 혹은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색상, 옥상장식물, 창틀 모양 및 색상 등 디자인, 지하출입구, 외부시설물(난간, DA, 옹벽 등), 조경디자인(식재계획, 조경 바닥 디자인 등), 단지 사인 및 조명(단지 BI사인물 포함), 주차장 구조체 공법(DECK PLATE 등) 등은 경미한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통해 형태, 재질, 색채, 공법 등이 부위별로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사항은 일부 입주자의 개인 취향 및 의견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외부 벽면, DA 등 외부시설물, 부대복리시설의 외부 입면 부위는 별도 지정도장 마감이 적용됩니다. •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의 디자인, 위치 및 규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측도로 북측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비상시 소방차 정차 공간이 설치되며, 위치 이동 및 제거할 수 없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동 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출입구(필로티 포함)(추가)의 형태(평면 형태, 외관 형태) 및 크기(폭, 높이)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 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별로 상이합니다. • 동 출입구의 입접세대는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 인근 세대 및 저층부 세대는 입주민의 통행, 현관 조명, 단지 내 조명 등으로 인하여 소음, 눈부심, 환경적 영향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계약 전 도면 및 모형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상1층 공동주택 주동 출입구는 판매시설 복도 내 설치되어 환경적 영향 및 사생활 침해, 보안 취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도면 및 모형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보관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 보관소는 지상1층 쓰레기 분리수거장 후면 및 판매시설 복도 내에 총 54대 설치되며, 공동주택 입주자 및 판매시설 입점자 및 이용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무인 택배 보관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택배보관소는 지하1층 1개소 설치하며 택배함 수량은 전체 세대수의 15% 이하로 설치됩니다.
재활용품보관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분리수거장은 지상1층에 설치됩니다. • 재활용품보관소는 판매시설용은 지하1층에, 공동주택용은 지하2층에 설치됩니다. • 재활용품 보관소 이용에 관련하여 필요시 입주 후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간의 협의에 따라 사용 방법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 (계단실, 엘리베이터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동의 계단실의 형태는 전용면적이 동일하더라도 동 형태에 따라 설비PD,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의 형태 및 면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엘리베이터 홀의 형태는 해당 동에 따라 각각 다르고, 사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운행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모형 및 도서를 통하여 엘리베이터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전실 및 홀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물건을 적치하거나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단지는 지하 2~3층에 공동주택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으며, 판매시설주차장은 지하1~2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건물 계획의 특성상 지하2층의 경우 공동주택과 판매시설의 주차구역은 차단기로 구분되어 사용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일부 주차장 사용구획 및 주차대수가 변경 될 수 있으니 이점을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 이용에 제한을 주거나 개별적인 소유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주차대수는 법정대수인 112대로 계획하였습니다. • 공동주택 주차대수 중 조례 규정에 따라 지하1~2층주차장에 여성우선주차구획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차구획을 임의로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각 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 통합형이며, 지하층 특성상 우기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평면 계획에 따라 주차대수의 배분은 주동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일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 등으로 인하여 차량 도어 개폐 시 간섭 또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 2-3층 주차장에 계획된 창고는 주차장에 부속된 공용창고로 입주인 창고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공용부 통로 공간, 계단실은 비난방·비단열공간으로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유효높이 확보를 위하여 일부 기둥, 보와 같은 구조체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진입램프 및 지하주차장에는 높이 2.7m 차량은 지하1층에만 진출입이 가능하며, 높이 2.3m 미만의 차량은 전 층 출입이 가능 하오니 이를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단, 주차공간은 높이 2.1m 미만의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며, 일부구간은 건축물의 구조 및 기계, 전기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천정고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 옥탑, 측벽에 태양광 구조물, 위성 안테나, 이동통신중계기, 피뢰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또는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 위치는 전문 업체의 검토를 통해 적정한 위치에 설치될 예정으로 이로 인한 환경적 영향과 소음발생,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 및 지상에 계획된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제연실 포함) 및 정화조, 제연 및 환기용 DA탑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인접세대의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라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차 충전설비는 지하1층 판매시설 주차장에 급속1대, 완속2대 설치되며,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입주자대표단 및 관리주체 간 협의를 통하여 사용가능여부 및 사용방법을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에 따라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후 전기차 충전설비는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지하층의 경우 공기 미순환 등으로 인해, E/V층 내부 및 지하층으로 연결된 계단실, 지하주차장 외벽 및 구조물 등에 결로 및 습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북측 주차램프, 남측 상가 전면 인근에 판매시설, 지하주차장 및 기계/전기실 등의 환기 및 제연을 위한 DA(환기탑)이 설치되며, 인접한 시설물 또는 인접세대 및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냄새, 풍압 등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조경식재, 야간조명, 홈네트워킹 등 단지 내 공용설비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 후 관리 규약에 따릅니다.
이사시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시 단지 내 보차도 바닥 마감, 조경, 세대의 층수, 창호형태 및 크기, 평면 형태, 입면 장식, 돌출발코니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의 제원에 따라 운반 가능한 이삿짐의 크기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대 복리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부대복리시설)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시설이며, 용도별, 계약면적, 대지지분 등에 따라 이용에 제한을 주거나, 소유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내 부대시설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재활용품 보관소, 자전거 보관대 등이 계획되었으며, 복리시설은 주민운동시설, 주민회의실, 다목적실, 독서실 등이 설치되며, 일체의 운영 및 보안, 유지 관리는 입주인 자치적으로 하여야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리시설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위한 입주인공동시설로써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간 협의에 따라 타용도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이용에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기타 시설물의 설치로 인접세대 및 저층부 세대는 일조, 조망, 소음, 진동, 눈부심, 냄새, 해충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냉방 실외기, 환기시설 등은 해당시설 외부 또는 외기를 향하여 설치되며, 인접세대 및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요 복리시설은 지상2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세대별 및 동별 위치 및 용도에 따른 거리에 따라 접근동선이 불리하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는 지상2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세대별 및 동별 위치 및 용도에 따른 거리에 따라 접근동선이 불리하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 경비실, 관리사무소, 피트니스센터, 주민회의실 등의 의 내부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며, 가구 및 가전, 소모집기 및 비품은 별도 제공되지 않으므로 입주 후 입주인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합니다.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단지 내 지상2층 녹지공간에 설치될 예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으로 대체되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설치 또는 미설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판매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시설은 지하1층 및 지상1층에 설치되며, 시설 이용자 및 입점업체에 따른 조명, 소음, 진동, 냄새 등으로 인하여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판매시설 인접세대 및 저층부 세대는 일조, 조망, 소음, 진동, 냄새, 해충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판매시설 각실은 전기,수도,가스등 원격검침설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위세대	가구 및 마감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및 결로 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천장의 올림공간(우물천정)의 천정고는 천장 내부의 해당 세대 및 상부층 세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다소 축소 또는 확대 되어 시공 되어질 수 있습니다. • 거실의 아트월 설치 및 복도 등의 벽체의 마감 두께로 인하여 인허가 도면보다 안목길이는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해당 세대 및 상부층 세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다소 축소 또는 확대 되어 시공 되어질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의 마감은 설치 후 시간경과에 따라 노후화가 발생되며, 자외선 및 각종 세제, 화학약품 등에 의해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신발장, 불박이장 등의 가구 뒷면 및 바닥, 천정에는 바닥마감재 및 벽지, 천정지 등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가구 약세서리, 힌지 등의 가구철물은 제품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치공간계획은 일반적인 사이즈로 계획하였으나 규격 등의 차이로 인해 돌출 되거나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반드시 실제 크기를 확인해야합니다. • 세대 내 주방의 기본사양 가전류 외 고용량 가전제품(전기인덕션 등)의 추가 설치의 사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조명기구 위치변경은 불가하며 계약 전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 관련 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상부 덕트의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씽크대 하부 및 가구 설치로 가려지는 부분은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싱크대하부 난방분배기에 연결된 노즐 난방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으며, 온수분배기 가림판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내부마감자재(마루재, 타일, 도배지, 시트 등)는 실제 시공 시 자재 특성상 고유문양 및 색상,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거울,수전류,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 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화장실(샤워부스 포함),현관 등의 단차 및 타일 줄눈의 모양 및 크기는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타일의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 발생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현관중문은 주택형별 사양(개폐타입,사이즈,색상 등)이 다르며, 본 공사 시 형태,재질,색상,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장 및 샤워부스의 디자인 및 디테일은 본 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실 바닥난방 (욕조, 샤워부스 제외) 및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며, 바닥레벨은 물넘침 방지 및 배수를 위해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설비 및 마감자재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발코니 내 세탁기 설치 등으로 인한 단차 발생구간은 낙상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닥배수구, 우수 및 배수 입상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세탁기 설치공간의 단차 구간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피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도 및 일부 세대 내(59Type)에 설치되는 완강기(지상 3층~10층만 설치) 및 세대 발코니에 인접세대로의 대피를 위해 설치한 경량구조 경계벽은 관련 법규에 따라 화재 발생시 대피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 또는 공간으로 일상생활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주 후 임의 훼손, 변경 및 제거, 물건적재 및 가구설치 등 기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관련 법규 위반시 입주자가 원상복구 등을 하여야 하고 별도의 과태료나 처벌 등 법적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상3 ~10층 일부 복도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완강기가 설치되며, 이에 따라 설치공간의 사용상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완강기가 설치되는 부분의 하부에는 피난을 위한 발판(벽부 고정형 접이식 발판 또는 발판 경용 완강기함)이 설치 또는 비치될 수 있으며, 향후 입주 후 개별적으로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실외기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어컨 실외기 사이즈에 따라 실외기실 내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며, 외부에 별도 설치가 불가하오니 구매 전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에어컨 작동 시 방충망을 닫고 사용 하는 경우에는, 냉방 성능이 저하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에어컨 작동 시 그릴창의 그릴을 개방하여 사용해야 하며, 폐쇄한 상태로 작동 시 냉방성능 저하, 고장 또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에 보일러와 수전 및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창문 또는 그릴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창의 크기, 재질, 색상, 손잡이 개폐방식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창호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내 설치되는 창호, 유리 및 손잡이의 형태, 열림 방향, 색상, 제조사 등은 본 공사 시 동질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창 프레임 및 날개 등은 금속성 재질로서 외기에 직접 면하므로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가 아니며 입주자가 관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철재문 및 방화문류의 설치 위치, 크기, 형태, 디테일은 시공성 및 성능개선을 위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은 내풍압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 실별 상이하게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옥외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 및 외부공간에는 동파발생 등에 따라 별도 수전을 설치하지 않으며, 입주 후 임의로 수전을 설치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하자보수는 입주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단, 옥외 일부구간 조경수전 설치) • 옥상 및 외부공간은 본 공사 시 건축평면 및 입면형태에 따라 해당 외부공간의 형태가 변경되거나 바닥의 단차, 난간, 배수처리 방법은 본 공사 시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 및 외부공간은 외측에 직접 노출되어 추락의 위험이 있으며, 그에 따른 안전을 위하여 철재 난간이 설치되며, 추락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설비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공동주택은 개별난방입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는 보일러, 전열교환기, 실외기 등이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 등에 의한 사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설치위치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냉방전용 에어컨은 거실, 안방(총2개소)에 설치되며, 실내기의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스탠드형 및 벽걸이용 냉매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에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판매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부속동의 실외기는 2층 옥상조경 내에 설치되며, 인접한 세대는 지상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및 열기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AD, PD 등에 공동주택, 판매시설 공용 정화조 배기관이 설치됩니다. 이에 따라 인접세대에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p>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코니 및 실외기실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 등에 전열교환기 덕트, 스프링클러 배관, 드렌처설비 등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임의로 철거 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실외기실, 세탁실 포함)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며, 사양, 위치, 개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상부에 발코니 및 테라스 등이 설치되는 경우 상부층 발코니의 배수 및 우수 배관이 천장 또는 천장속에 설치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내 배수용 선홍통은 발코니 또는 PD내에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손빨래 수전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시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환기시스템은 건본주택에 설치된 전열교환장치 또는 동등이상의 사양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점검구의 위치 및 사양,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스 계량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 실별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 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창호 및 외기노출벽면 마감재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로 인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화조는 공동주택, 판매시설이 용도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관리층은 통합 사용되며, 정화조의 설치로 인하여 인접세대의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상층 및 PD 또는 AD 등에 공동주택, 판매시설 공용 정화조 배기관이 통합하여 설치됩니다. <p>배기관의 설치위치에 따라 인접세대에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전기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전기기구(홈네트워크, 조명기구, 스위치, 콘센트 등) 설치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전기분전반/통신단자함의 설치 위치 및 높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방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유상옵션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평형별 유상옵션과 무상옵션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 및 선택제에 따라 설치되는 등기구의 위치 및 콘센트, 스위치의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설치된 유상옵션(에어컨, 인테리어 등)은 현장여건 하에 계획된 사항으로 계약자에 기호에 따라 추가 및 변경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친환경 건축물 성능수준 표기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의무사항 적용 여부)

구 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방습층 설치 조치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친환경 인증보일러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 · 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효율의 1.1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분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정멸스위치(마목)	미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따라 자동으로 정멸되는 스위치설치

IX 기타 안내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단위: 원, VAT별도)

구분	건축	토목	전기,통신,소방	구조	기계
회사명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고우건축	시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식회사 인곡기술사사무소	주식회사 반석구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맥앤드엠이씨
감리금액	488,300,000	51,000,000	83,700,000	9,000,000	48,000,000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동 등으로 인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아래 공시내역은 실제 분양가격 기준으로 작성됨

▣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제16조제1항 관련)

<p>■ 택지비및건축비가산비산출내역</p> <p>•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주택법」 제 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p>			
(단위 : 원)			
항 목	심사결과금액	산출근거	
택지비가산비	기부채납 택지비	383,019,000	일부 조정
	감정평가수수료	53,947,000	일부 조정
	암석지반 공사비	104,332,000	일부 조정
	흙막이 및 차수벽공사비	4,602,067,000	일부 조정
	지장물철거비	241,027,000	일부 조정
	각종 부·분담금	339,975,000	일부 조정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57,100,000	전액 인정

	소 계(택지비 가산항목)	5,781,467,000		
건축비가산비	법정초과 복리시설 건축비	19,276,000	일부 조정	
	인텔리전트 설비공사비	홈네트워크	1,017,332,000	일부 조정
		에어컨냉매배관	200,329,000	일부 조정
		기계환기설비	389,008,000	일부 조정
	지하주차장 층고 증가 공사비	101,995,000	일부 조정	
	법령개정 에 따른가산비	전기자동차충전기	32,031,000	일부 조정
	사업승인조건	법정초과 조경시설설치비	19,686,000	일부 조정
	-	-	1,779,657,000	-

■ 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

※ 본 공급물건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천수산업개발(주), 시행수탁자 KB부동산신탁(주) 및 시공사 에스지씨이테크건설(주), 대출금 용기관인 우선수익자 등 간 체결한 책임준공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하며, 본 특약사항의 내용이 분양 계약의 다른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인정합니다.

- 본 사업은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신탁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시공사의 하자, 공사감독, 용역비지급, 민원의 처리와 해결,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반환 및 하자담보책임 등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체결한 토지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매도인으로서의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수탁자(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분양 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천수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된다.
 - 매수인은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PF대출원리금의 상환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한다.
 - 매수인은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모든 하자보수의 책임은 시공사인 에스지씨이테크건설 주식회사에게 있으며 시공사 교체사유발생 등으로 인한 시공사(건축물 브랜드·명칭 변경 포함) 교체시 매수인은 사전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분양계약 목적물은 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매도인 겸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며), 하자보수책임 등 시공사의 의무는 시공사 에스지씨이테크건설(주)에게, 분양계약 해제(해지)시 분양대금 반환 책임 등 사업시행자의 책임은 주식회사 천수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있다.
 - 매수인은 분양대금을 반드시 분양 계약서에서 명시한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분양대금수납계좌에 직접 입금하여야 하며, 동 계좌로 입금(무통장입금 및 계좌이체 방식)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유효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형식적인 시행사로서 사업주체(건축주) 및 분양권자로서의 의무나 책임은 천수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이의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정책(중도금대출 제한비율 강화, 담보대출 제한 등), 금융기관 미확보 등에 따라 중도금대출, 담보대출이 제한(축소)되거나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축소), 대출불가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분양대금을 자기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사업주체(건축주)로서의 일체의 의무와 책임 및 분양광고 등 분양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의무와 책임은 주식회사 천수산업개발 주식회사가 부담하며,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은 이와 관련하여 매수인이 입은 손해 및 손실의 배상을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청구할 수 없다.
 - 위탁자 주식회사 천수산업개발 주식회사 및/또는 분양대행사(소속 임직원 포함)는 수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승인없이 단독으로 또는 매수자(수분양자)와 합의하여 본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행위, 본 분양계약의 내용·효력을 변경하거나 상실시키는 행위, 매수자(수분양자)의 분양대금·연체료·위약금 채무 등을 감면하는 행위, 매수자(수분양자)가 납부하는 분양대금 등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 매수자(수분양자)에게 본 분양계약의 내용과 상충되거나 본 분양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약속·확약하는 행위 등 일체를 할 수 없으며, 본 분양계약상 수탁자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수탁자를 대리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다만,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한하여 수탁자를 대신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매수자(수분양자)가 본 분양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지체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매수자(수분양자)에 대한 이행최고 또는 위반사항 시정촉구 통지

2. 매수자(수분양자)에 대한 본 분양목적물의 입주지정일(또는 입주지정기간) 통지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시행위탁사	시행수탁사	시공사
상호	천수산업개발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에스지씨이테크건설 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08, 7층(정화빌딩)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3~6층, 13층(송암빌딩)
법인등록번호	110111-2934829	110111-1348237	110111-0327555

■ 견본주택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36

■ 분양 홈페이지 : <http://화곡더리브스카이.com>

■ 분양 문의 : ☎1588-4236

■ 본 주택은 후분양 상품으로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함.

보증기간	연대보증건설사	법인등록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에스지씨이테크 건설주식회사	110111-0327555
	주식회사 에이치디한울종합건설	110111-663023

*보증내용 : 상기 연대보증사는 시공사가 부득이한 사정(부도, 폐업, 파업에 의한 직장폐쇄, 고의에 의한 공사지연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 또는 중단될 경우 일체의 공사를 승계하여 사용승인을 완료함.

■ 관리형 토지신탁

* 본 공급물건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천수산업개발(주), 시행수탁자 KB부동산신탁(주) 및 시공사 에스지씨이테크건설(주), 대출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함.

* 본 공고에서 시행수탁자 KB부동산신탁(주)는 분양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공고에 따른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천수산업개발(주)가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하여야 함.

*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천수산업개발(주)과 시행수탁자 KB부동산신탁(주) 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포함), 본 사업상 시행자 및 매도자의 지위에 기한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천수산업개발(주)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귀속)되며, 이에 따라 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천수산업개발(주)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됨.

* 본 분양물건은 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분양계약자는 신탁사인 KB부동산신탁(주)를 상대로 준공건축물의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위탁자 겸 수익자인 천수산업개발(주)과 시공사인 에스지씨이테크건설(주)에게 있음.

*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또는 그 밖의 부대사업비와 이와 관련한 PF대출금 상환 등 본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

*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하여야 함.

* 청약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및 이 공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